

#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

##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### 검 토 보 고

#### I. 주요내용

- 법률의 제명을 ‘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’에서 ‘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’로 변경함(안 제명).
- ‘인공지능’, ‘인공지능기반행정’ 및 ‘학습용 데이터’를 정의함(안 제2조제1호·제3호·제6호).
- ‘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’의 명칭을 ‘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’으로 변경하고, 책임관의 업무에 학습용 데이터 관리 및 인공지능의 신뢰기반 조성 등을 추가함(안 제19조제3항).
-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사업자 또는 연구자 등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‘공공 인공지능·데이터협회’를 설립할 수 있고,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협회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6조)
-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인공지능 이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의무 및 해당 교육을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28조)

- 전문기관 및 협회의 임직원에 대해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가함(안 제33조).

## II. 검토의견

### 1.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필요

- 안 제19조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‘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’의 명칭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‘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’으로 변경하고 있음.
- 법률의 개정으로 직위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 전후의 동일성과 구법에 따라 발생한 효력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명확하고<sup>1)</sup>, 행정안전부는 이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장이 모두 새롭게 ‘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’을 임명해야 하는 취지는 아니며, 기존의 ‘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’이 ‘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’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임.
- 따라서 부칙 제3조에 종전에 임명된 ‘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’을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‘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’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행정

---

1) 국회사무처, 「법제기준과실제(2024 개정증보판)」, p.887.

안전부와 협의하여 마련함.

<안 부칙 제3조에 대한 수정의견>

| 개 정 안              | 수 정 의 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&lt;신 설&gt;</u> | 제3조(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 관한<br>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<br>제19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데이터<br>기반행정 책임관은 제19조제1항의<br>개정규정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<br>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임명된 것<br>으로 본다. |

- 그 밖에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,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등의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병 섭)